

「국토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 공고

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「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26.

김 해 시 장

1. 사업개요 : [국토부]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- 지원대상 : ' 23. 1. 1.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* 7천만원) 이하인 무주택 청년**

*신혼부부: 혼인기간 7년 이내 (혼인신고일 ~ 신청일)이며,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자 및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청년이어야 함

**청년: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(신청일 기준)

○ 지원조건

-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
 - (주소) 주민등록상 김해시 거주 무주택 청년
 - (연령)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만 39세 이하
 - (보험) ' 23. 1. 1.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
- ※ 보증기관 :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HF(한국주택금융공사), SGI(서울보증)
- (주택) 김해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
 - (소득) 본인 연소득 5천만원(신혼부부 7천만원) 이하

○ 지원 제외 대상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- '23.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
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2. 신청방법

○ 신청기간: 2023. 7. 26. ~ 예산 소진 시까지

○ 신청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※ 우편, fax 신청·접수 불가

- 방문접수: 김해시 공동주택과
- 온 라 인: 경남바로서비스(www.gyeongnam.go.kr/baro)에서 신청
- ※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

(위임장,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)

3. 제출서류 ※ 모든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(직인날인)여야 함

	신 청 서 류	발 행 처
①	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	신청인
②	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(보증료, 전세보증금 확인)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	가입기관
③	임대차계약서(사본)	신청인
④	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	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(대법원 인터넷등기소)
⑤	주민등록등본(임차주택 전입 여부)	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(정부24)
⑥	혼인관계증명서(혼인기간 7년 이내 여부)	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(정부24)
⑦	본인명의 통장(사본)	-
⑧	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-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	홈택스/세무서

4. 심사기준 및 대상자 결정

- 심사 기간: 30일 이내(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)
- 임차보증금: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
- 연소득: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 확인
- 보증가입일: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
- 보증료 납부: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
- 주택소유 여부: 국토부(주택기금과)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 소유 여부 확인
- 제외 여부: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
 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 - ⇒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
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 - ⇒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
 - '23.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자
 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결과 통지: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'적합'으로,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'부적합'으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

5. 지원금 지급

-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(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, 최대 30만원)

6. 이의신청

-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김해시 제출
-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요건 재확인하여 통보

7. 선정기준

-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서 순차적 지원
- 신청자의 신청 지원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 순서로 선정
-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불가

8. 기타사항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기타사항은 김해시 공동주택과(☎055-330-4314),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.

- 붙임 1. 지원신청서 1부
2. 서약서 1부.
3. 참고사항 1부. 끝.

서식1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

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

(2쪽 중 1쪽)

처리기간		별도안내			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휴대전화
	주소				전자우편
자격요건	주택소유여부 ¹⁾		(○, ×)	신혼부부 여부 ²⁾ (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) (○, ×)	
	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³⁾		(○, ×)	보증기관 ³⁾	
	보증가입일자 ³⁾		. . .	납입보증료 ⁴⁾ 원	
	임차보증금		원	연소득 ⁵⁾ 원	
지급계좌 ⁶⁾		성 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비고
통지방법		☐ 서면 ☐ 전자우편(E-mail) ☐ 문자메시지서비스(SMS) ☐ 기타 ()			

- 1)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(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)소유 여부 기재
(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)
- 2) 혼인관계증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
- 3)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
- 4)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
- 5)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
- 6)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	확 인 (√ 체크)
1.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 ※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☐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(시·군·구청장)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☐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, 소득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☐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5제1항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(보조금의 중복·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		

유의 사항	확인 (√ 체크)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,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[]
2.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[]
3.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	[]

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
며, 위와 같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이
이
이

신청인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시장.군수 귀하

제출서류	1. 본인확인 서류 : 신분증 2. 서약서 3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(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) 4. 임대차계약서 5.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. 주민등록등본 7. 혼인관계증명서 8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9. 본인명의 통장 사본
------	---

'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' 서약서

'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' 과 관련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2023. . .

성명

(서명)

참고

신청서류 참고사항

소득금액 증명원 확인 사항

발급번호	소 득 금 액 증 명 (년 귀속)							처 리 기 간	
								즉 시	
주 소									
성 명				주 민 등 록 번 호					
◇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 (단위 : 원)									
구 분	종합과세							분리 과세	총 결정세액
	이자	배당	사업	근로	연금	기타	합계		
수입금액									
소득금액									
*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이월결산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* 분리과세 :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한 분리과세 소득(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계약금이 위약금·배상금으로 대체된 기타소득)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합계액 * 총 결정세액 :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합계액									
◇ 연말정산(지급명세서 제출) 현황 [* 종합소득세 신고(결정·경정) 현황에서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는 경우 미기재] (단위 : 원)									
구 분	소 득 발 생 처		지급받은 총 액	소득금액	총 결정세액	비고			
	법인명(상호)	사업자등록번호							
사업소득									
근로소득						(연말정산) (일용근로)			
연금소득									
종교인소득									
(납세자가 신청한 증명 귀속연도 : ~)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 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 세 무 서 장 (인)									

-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확인합니다.
 (소득발생기간 고려하지 않음)
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연말정산 대상자로 구분하여 확인하되,
 근로소득은 수입금액으로,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확인합니다.
 만약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
 근로소득(수입금액)+사업소득(소득금액)으로 확인합니다.